

- 4. 조례(안) : 별첨
- 5. 예산조치필요성 : 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표>수수료액표중, 2. 항결핵제보급의 비고

란에 “단, 아이나(INH)단독처방만 무료임”
을 신설한다.
<별표>수수료액표중, 3. 유료접종 종목란에
“사. 유행성 독감”을 단위란에 “0.5ml”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수수료액표					<별표> 수수료액표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1.(생략)					1.(현행과 같음)				
2.항결핵 제보급	가.~나. (생략)	(생략)	(생략)	<신설>	2.항결핵 제보급	가.~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단,아이 나(INH) 단독처 방만무 료임
3.유료접 종	가.~바. (생략)	(생략)	(생략)		3.유료접 종	가.~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사. : 유행성 독감	0.5ml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
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 5. 11.
도시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4월 26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6년 4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38회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96.5.11.)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토목과장 정만근
 - 가. 제출이유

복잡하고 대형화된 도시기간 시설의 안
전진단, 공사설계시행등에 관하여 필요시
적기에 관계 전문가의 체계적인 기술적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
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
에 의거 건설기술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
임.

나. 주요골자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등의 자문등 건설기술자문단의 기능
자문단 구성, 임기 및 단장 부단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자문단 회의운영 및 자문방법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사항을 위하여 현장출장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동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도시건설의 안전진단 및 각종 건설공사 시행상 전문적 기술검토등 체계적인 기술자문을 관계 전문가로부터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 그 동안은 마포구예규로 규정되어 위원 수당등 예산이 수반되는 경비를 제출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적합치 않으므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수당지급 규정등을 정하는 등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응봉 위원): 제12조 본문중 "현장출장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 금액이 없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지급 상한선을 두어야 적절하다고 봅니다.
 - 답변요지(정만근 토목과장): 출장여비는 예산편성시 조례에 의거 책정하였습니다.
 - 질의요지(김영식 위원): 자문단등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많으나 유명무실한 것 또한 많다고 생각됨. 위원회를 설치만 하고 운영의 묘를 못살리면 예산낭비이다.
 - 답변요지(정만근 토목과장): 공무원들의 부족부분을 기술자문단을 효과적으로 운영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 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75
----------	----

제출일자: 1996. 4. 26.
 제출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 복잡하고 대형화된 도시기간시설의 안전진단, 공사설계시행등에 관하여 필요시 적기에 관계전문가의 체계적인 기술적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등의 자문등, 건설기술자문단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자문단의 구성, 임기 및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5조)
 - 자문단 회의운영 및 자문방법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사항을 위하여 현장출장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5.12.29. 법률제5069호) 제15조
 - 지방자치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제14877호) 제42조
4. 조례(안):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 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잡하고 대형화된 도시기간시설의 안전진단, 건설공사의 설계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시 적기에 관계전문가의 체계적인 기술적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에 관한 기술사항
2.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공공용 시설물의 공사설계시행의 적정성 여부 및 그 공법의 타당성
3. 공사추진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하여 자문의뢰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의뢰한 사항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
2. 도로, 구조, 토질 및 기초, 환경, 교통, 상·하수도, 건설안전, 조경, 건축, 기계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건설기술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 ①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단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③회의는 분야별위원의 전문적 기술성을 고려하여 의결방법은 채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사안에 대하여 전문기술적인 의견의 상충·대립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의결한다.

④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진술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방법) ①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을 의뢰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참고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도 있다.

제8조(의견청취등) ①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보고) 자문단의 간사는 자문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국장이 되고, 서기는 토목과장이 된다.

제12조(수당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사항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현장출장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및 자문단 구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및 구성된 것으로 본다.

아현동도시가스폭발피해지역재건축에관한
청원심사보고서

96. 5. 11.

총무재무위원회